비조치의견서 (□비조치 ☑조치 □기타)

요청대상 행위	□ 인터넷망에 위치한 인터넷 전용 PC 등을 금융회사 내부 업무망에 설치된 라우터,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로 연결하여 그룹 계열사 공동시스템에 접속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망분리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
판단	□ 요청대상 행위는 망분리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.
판단이유	□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해킹 방지를 위해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 처리시스템과 이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물리적 으로 분리해야 하는데(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15조제1항제5호)
	○ 여기서 정보처리시스템은 전자금융업무를 포함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 및 관련 장비를 의미(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2조제3호) 하므로, 라우터,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.
	□ 따라서, 「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」제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망분리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인터넷망에 위치한 PC를 내부 업무망에 설치된 네트워크 장비로 연결하는 것은 동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- ** **비조치의견서의 효력**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항· 제2항 참조)
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 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 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 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 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 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 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